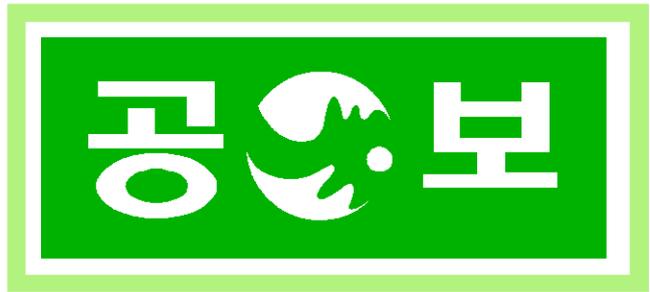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780 호 2012. 10. 29(월)

훈 령

-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85호[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] 2
-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86호[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] 7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56호[하천점 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] 9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57호[도로명주소 고시]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58호[도로명주소 변경 고시] 1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59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1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60호[도로명 고시] 16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-810호[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 및 열람공고] 18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
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윤종오



2012년 10월 29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 185호

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울산광역시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”을 “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울산광역시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”을 “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”로 하고, “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”을 “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울산광역시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”을 “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”로 한다.

별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 표】

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(제7조 관련)

1. 무기계약근로자(단순노무원, 도로보수원, 환경미화원)의 보수

부 서 별	총 계	단 순 노 무 원					도 로 보수원	환 경 미화원
		계	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	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	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	단순잡역 조무인부		
합 계	102	42	27	5	8	2	4	56
기획홍보실								
총 무 과	10	10	5	4	0	1	0	
주민참여과								
회 계 과								
문화체육과	7	7	7					
도 서 관 과	7	7	7		0			
세 무 과	1	1			1			
민원지적과	2	2			1	1		
복지지원과								
사회복지과								
경제일자리과								
환경위생과	1	1	1					
환경미화과	57	1			1			56
건설방재과	6	2	1		1		4	
도시녹지과	2	2	2					
교통행정과	4	4	1		3			
건축주택과	2	2		1	1			
농수산과								
보 건 소								
농소2동	1	1	1					
농소3동	2	2	2					
효문동								

2. 청원경찰의 정수

부 서 별	총 계	경 비 청원경찰	단속감시청원경찰			
			계	그린벨트 단 속	과적차량 단 속	하천감시
합 계	11	3	8	4	2	2
기획홍보실						
총 무 과	2	2				
주민참여과						
회 계 과						
문화체육과						
도 서 관 과						
세 무 과	1	1				
민원지적과						
복지지원과						
사회복지과						
경제일자리과						
환경위생과						
환경미화과						
건설방재과	3		3		2	1
도시녹지과	3		3	3		
경제교통과						
건축주택과	1		1	1		
농 수 산 과	1		1			1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개정이유

-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운용인력 보강
- 현행 인력배치에 맞게 정수표 일부 조정

2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7조 관련 별표 중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조정

1. 정수 조정(천곡문화센터 인력보강)

부서명	직 종	감	현 정원	조정 정원
도시녹지과	단순노무원	△1	3	2

→

부서명	직 종	증	현 정원	조정 정원
농소3동	단순노무원	1	1	2

2. 직종 불부합 개선

【조정 전】

부서별	총계	단순노무원					도로 보수원	환경 미화원
		계	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	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	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	단순잡역 조무인부		
합계	102	40	27	1	10	2	6	56
총무과	10	8	5		2	1	2	
도서관과	7	7	6		1			
교통행정과	4	4	2		2			

【조정 후】

부서별	총계	단순노무원					도로 보수원	환경 미화원
		계	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	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	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	단순잡역 조무인부		
합계	102	42	27	5	8	2	4	56
					

총무과	10	<u>10</u>	5	<u>4</u>	<u>0</u>	1	<u>0</u>
도서관과	7	7	<u>7</u>		<u>0</u>		
교통행정과	4	4	<u>1</u>		<u>3</u>		

Ⅲ. 정원 운용 : 113명 → 113명 (정원 증원없음)

【조정 전】

구 분	총 계	단순노무원	도로보수원	환경미화원	청원경찰
정 원	113	40	6	56	11

【조정 후】

구 분	총 계	단순노무원	도로보수원	환경미화원	청원경찰
정 원	113	42	4	56	11

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을 이에
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윤종오



2012년 10월 29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 186호

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

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폐지이유

- “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”에 명기된 인사위원회 설치, 구성, 기능과 승진, 전보 등이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되고 구간 전보, 교육대상자 선발 등 현재 시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,
-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동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규정을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과 내용이 중복된 비효율적인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」 폐지

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2-156호

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0조제6항,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0월 2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박 근 규							
주 소	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101동 3202호							
점용위치	어물동 1278, 산155-1, 943번지		하 천 명	금 천				
점용목적	영농을 위한 하천공작물설치		점용면적 (㎡)	구 분	일시	영구		
				지방하천	331	331		
점용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 시 ◦ 영 구 		2012. 10. 29. ~ 2013. 10. 28.					
하천공사의 명칭	교량 설치공사		하천공사 목적	영농을 위한 교량 설치				
하천공사 시행자 성명(주소)	점용지와 동일		공시기간	2012. 10. 29. ~ 2013. 10. 28.				
공사위치	어물동 1278번지 외 2필지							
토지 소재지	소재지		지 번	지 목	내장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	소유자
	구,군	동,리				하천구역	하천외정지	
	북구	어물동	1278	천	2,883	158		국(국토해양부)
			산155-1	천	1,299	153		국(농림수산부)
			943	답	2,060	16	4	박근규
계					327	4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-157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0월 2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 북구 진장7길 3-10외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0. 29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288 2-2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7길 3-10(진장동)	2012-10-29	옛시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관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	2004-12-27	
2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299-10	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길 18(영포동)	2012-10-29	신선일대가 삼포개발 당시 새장터(소금과는상)로 사용하여 서장터로 도로명 부여	2004-01-05	
3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84-23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4-1(호계동)	2012-10-29	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	2009-08-20	
4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4-20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동로 52-8(진장동)	2012-10-29	진장유동간지의 유통간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	2009-01-23	
5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4-2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동로 52-12(진장동)	2012-10-29	진장유동간지의 유통간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	2009-01-23	
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618 9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길 27-1(진장동)	2012-10-29	옛시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	2004-12-27	
7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58 11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5길 5-5(명촌동)	2012-10-29	옛시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	2004-01-05	
8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266 2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121(천곡동)	2012 10 29	주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을 사용하였으며, 천곡 등 진제지역의 남쪽에 위치하여 두루명을 부여	2008 03 11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-158호

도로명주소 변경 고시

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0월 2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창좌1길 15외 1건
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
.(별지참조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0. 29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사래동 4-2	울산광역시 북구 황포1길 15	울산광역시 북구 황화1로 21-10(사래동)	2012-10-29	확대부여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면촌지구 106B 4-2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3길 45-1(명촌동)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3길 45-1(명촌동) (응)	2012-10-29	차도부여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 -15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0월 29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정자7길 49외 1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0. 29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년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정지7길 49	울산광역시 북구 정지동 28	2012-10-29	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2길 12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98-1	2012-10-29	멸실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-160호

도 로 명 고 시

『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설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0월 29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고 시 일 : 2012. 10. 29.

○ 고시방법 : 공보게재,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·게시판 게재

○ 도로명 고시 내용 : 붙임 참조

일련 번호	도로구간		연장	폭	도로명	도로명부여사유
	시점	종점				
1	산하동 713-3	산하동 산191-8	322	8	산음3길	기존 자연마을인 산음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

○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	신청을 받은 날부터 →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	10일 이내	주민 의견 수렴 공고	14일 이상	주변의견 수렴한 날부터 → 30일 이내	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	심의 마친 날부터 → 10일 이내
						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

공고 및 신청인 통보	공고한 날부터 → 30일 이내	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	동의 얻은 날로부터 (동의 생략 포함) → 10일 이내	고시 및 신청인 통보
		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		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
. 심의 결과 . 내용 및 절차		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	동의 만료일부 → 10일 이내	공고 및 신청인 통보
		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하		결과 통보

※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하며,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

○ 도로명 부여 도면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(☎052-241-758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도로명 부여 조서

연번	구분	도로명	도로구간		길이 (m)	부 위 (n)	기초 위계 (n)	기초 간격 (n)	기초번호		부여(신설, 변경)사유	고시일
			기점	종점					시작	끝		
1	신규 부여	신용3길	산하동 713-3	산하동 산191-8	322	8	길	20	1	84	기존 자연마을인 신용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	2012-10-29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- 810호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 및 열람공고

북구 당사동 49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, 같은 법 제28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. 10. 25.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■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I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시·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30	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80번지 일원	179,340	-	179,340	'03. 12. 31 울고218호

II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도로

(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 용 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기정	소로	3	53	6	국지 도로	72	중2-17	당사동 250-1	일 반 도로	당사금천지구	'05. 3. 24 울고 106호	'12. 2. 16 울고 24호
변경	소로	2	A	8	국지 도로	72	중2-17	당사동 250-1	일 반 도로	당사금천지구	'05. 3. 24 울고 106호	폭원확장

(2)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 3-53호선	소로 2-A호선	• 도로 폭원 확장 (B=6→8m, L=72m)	• 당사금천지구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원 확장

나. 녹지

(1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번호	시설명	시설의세	위 치	변 직 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206	녹 지	경관녹지	북구 당사동 396번지 일원	2,520	감)45	2,475	'05. 3. 24 울고 106호	
변경	207	녹 지	경관녹지	북구 당사동 484번지 일원	860	감)15	845	'05. 3. 24 울고 106호	

(2) 녹지 변경사유서

도면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 서
206	녹 지	▪ 면적 감소 (A=2,520㎡→2,475㎡, 감45㎡)	▪ 도로 확폭에 따른 면적 감소
207	녹 지	▪ 면적 감소 (A=860㎡→845㎡, 감15㎡)	▪ 도로 확폭에 따른 면적 감소
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- 공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-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: 북구청 도시녹지과
- 공람장소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따른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녹지과(☎052-241-79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